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1
-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찬성의원 10명)
- 발 의 일 : 2018년 7월 24일
- 회 부 일 : 2018년 7월 30일

## 2.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은 2000.10.10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바 해당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한편,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 (2018. 8. 2. ~ 8. 9)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교통비와 급식비 등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sup>1)</sup>에 규정된 지급기준을 조례(「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 2 제1항 및 {별표})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규칙)	개정(조례)
·교통비 : 3,000원 이내 ·급식비 : 5,000원 이내	·교통비 : 8,000원 이내 ·급식비 : 12,000원 이내

-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조례로 격상시켰다는 측면과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정이후(2000.10.10.)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음식/숙박 물가지수 : 67.373(2000.10) → 107.75(2018.08)로 60% 상승

※ 교통 물가지수 : 73.490(2000.10) → 104.56(2018.08)로 42% 상승

-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5,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등

## 나. 경비지급의 자원봉사활동 취지 훼손 여부(안 제10조의2 제1항)

- 안 제10조의2 제1항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u>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u>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금번 자원봉사 필요경비 지원근거의 마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民)이 앞장서고 관(官)이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공동 사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2))에서 무보수성,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보험의 가입 등 자원봉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제14조)<sup>3)</sup>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제18조)<sup>4)</sup>만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필요경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조례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와 함께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관련 근거미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은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과 동기 부여 등 자원봉사 토대 마련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 경비 지급기준의 적정성 여부변경(안 [별표 1] 신설)

- 안 [별표 1]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가상승률에 근접하게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b>[별표 1]</b></p> <p><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li> <li>·교통비: 8,000원 이내</li> <li>·급식비: 12,000원 이내</li> <li>·활동용품비 등</li> </ul> </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li> <li>·교통비: 8,000원 이내</li> <li>·급식비: 12,000원 이내</li> <li>·활동용품비 등</li> </ul>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li> <li>·교통비: 8,000원 이내</li> <li>·급식비: 12,000원 이내</li> <li>·활동용품비 등</li> </ul>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현행(규칙)	개정(조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교통비 : 3,000원 이내 ·급식비 : 5,000원 이내	·교통비 : 8,000원 이내 ·급식비 : 12,000원 이내

- 지급기준 제정(2000.10.10.)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없이 고정되어 있던 현 규칙의 규정사항에 대해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봉사시간(1일 4시간) 대비 교통비(8,000원)와 급식비(12,000원)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전국 광역시·도의 대다수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경비(참고자료)의 경우, 지급기준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도 금액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1차 행정국 의견 :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급식비는 공무원 급식 단가 기준(8천원)으로, 교통비는 5천원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수정의견).
  - ※ 2차 행정국 의견 : 지급기준은 일정기간(3년)마다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소요시간, 기간, 절차 등 지급기준 개정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 제안 의견).
-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취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17개 광역시도중 서울시, 충남, 대전, 울산, 세종, 광주광역시 5개 도시가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택
------	-----	-------	-----

**참 고 1**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출 내역 (2017년)**

(단위 : 명, 원)

기 관 (부서명)	인 원 (지급건수)	교 통 비	급 식 비	활동 용품비
<b>계</b>	<b>43,870</b>	<b>102,973,000</b>	<b>189,489,200</b>	<b>60,219,820</b>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정부수반유적 유지운영	1,886	5,658,000	9,430,000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남산골한옥마을	1,500	4,500,000	7,500,000	6,000,000
서울시어린이병원	6,514	-	23,386,700	-
아동복지센터	177	-	885,000	4,605,110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196	588,000	980,000	583,900
정보공개정책과	1,050	3,150,000	5,250,000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1,515	4,545,000	7,575,000	5,280,000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2,145	6,435,000	10,725,000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5,551	16,653,000	27,755,000	12,103,87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203	1,963,000	2,557,000	1,725,28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과과)	6,221	18,663,000	31,105,000	269,800
한성백제박물관	6,966	20,898,000	34,830,000	7,200,000
서울시은평병원	2,859	8,577,000	14,295,000	980,000
서울시서북병원	5,064	5,274,000	9,918,000	14,422,030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81	543,000	905,000	-
서울대공원	1,842	5,526,000	9,210,000	7,049,830

○ 총 지급인원(지급건수) : **43,870명(건)**

○ 총 지 급 액 : **352,682,020원**

- 교 통 비 : 102,973,000원

- 급 식 비 : 189,489,200원

- 활 동 용 품 비 : 60,219,820원

참 고 2

자치구 및 광역지자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연번	자치구	봉사시간	교통비	식비	비고
1	강남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2	강동구	4시간 이상	5,000원 이내	5,000원 이내	
3	강북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4	강서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8,000원 이내	급식비 상향(7천원→8천원)
5	관악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6	광진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5,000원 이내	
7	구로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8	금천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9	노원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10	도봉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1	동대문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2	동작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5,000원 이내	
13	마포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4	서대문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15	서초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6	성동구	2시간 이상	4,000원 이내	6,000원 이내	
17	성북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8	송파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9	양천구	4시간 이상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급식단가 : 8,000원
20	영등포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21	용산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22	은평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23	종로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24	중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7,000원 이내	
25	중랑구	4시간 이상	3,000원 이내	5,000원 이내	

□ 광역 지자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연번	지자체	봉사시간	교통비	식비	비고
1	경기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2	강원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2015.8.7. 지급기준 삭제)
3	경상남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4	경상북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5	충청남도	4시간 이상	5,000원 이내	5,000원 이내	
6	충청북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7	전라남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8	전라북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9	제주도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0	인천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1	부산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2	대구	-	-	-	별도 지급기준 없음
13	광주	3시간 이상	별도 규정 없음	5,000원 이내	
14	대전	4시간 이상	별도 규정 없음	7,000원 이내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5천원→7천원)
15	울산	4시간 이상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급식단가 : 8,000원
16	세종	4시간 이상	5,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급식단가 : 8,000원